#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57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이수진・이기헌・신정훈

송옥주 · 서영교 · 민형배

추미애 · 송재봉 · 민병덕

이연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 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 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 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보장에 드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2조 중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 를 한 경우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 항을 위반한 자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 본문, 제23 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 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 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 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 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명예 <신 설> 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 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 을 통해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 위촉과 활동보장에 드는 소 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172조(벌칙) <u>제64조제1항제1호</u> 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u>자</u>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신 설>

-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 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2조(벌칙) <u>다음 각 호의</u>	o d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 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1				
				<u>제</u> 2
2조제	1항 본	-문, 저	]23조제	<u>]2항</u> -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 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 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 (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 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 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 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16. (생략)

⑥·⑦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